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1. 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6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기준·범위 등을 정하여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토록 함(안 제4조)
- 2)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3)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4) 수탁사무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와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제4조의 대상사무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정, 전문성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체결절차와 내용을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 및 비용의 징수 등을 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의 지도, 감독과 사무편람 및 위탁의 취소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동조례 표준안에 따른 제정안으로서 검토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88
------------	----

제출년월일 : 1999. 10.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기준·범위 등을 정하여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토록 함(안 제4조)
- 나.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라. 수탁사무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와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마. 구청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 비용의 징수 등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와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사항과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토록 하고 수탁기관이 의무 불이행시 위탁의 취소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 나. 협의사항 : 합의되었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타
 - ① 입법예고('99.6.21~7.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② 규제영향평가 : 제5차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99. 8.27)심사필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 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

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역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

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7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